

용인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I. 법 제11조 제1항 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대학평의위원회	11	4	고등교육법 제19조의2
2	등록금심의위원회	9	5	고등교육법 제11조
3	기금운용심의회	9	3	사립학교법 제32조의3
4	동물실험윤리위원회	6	2	동물보호법 제51조
5	기관생명윤리위원회	7	1	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
6	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	8	1	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

II. 법 제11조 제1항 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‘해당 사항 없음’		

※ 위임·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기관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III. 법 제11조 제1항 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1	‘해당 사항 없음’	

IV. 법 제11조 제1항 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	‘해당 사항 없음’		

※ 심의·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